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5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임광현·정일영·오기형

김태년 • 윤호중 • 이연희

정성호 · 정태호 · 강준현

김영환 • 박홍배 • 이기헌

강유정 • 황정아 • 김기표

문금주 • 윤종군 • 이재관

민홍철 · 송재봉 · 박민규

안규백 • 차지호 • 정진욱

박희승 • 최기상 • 임미애

조계원 의원(28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 세하도록 하면서,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, 반기별 원천징 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. 따 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02조의6 삭제 등).
- 나.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삭제에 따른 특별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89조제3항 및 제103조제13제2항 등).
- 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부칙 제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1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9조제3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.

제102조의6을 삭제한다.

제102조의7제3항제2호 중 "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제97조"를 "제97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0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 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 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.

제103조의59제1항제1호나목 중 "매매차익예정신고, 같은 법 제87조의 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"를 "매매차익예정신고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법률 제1922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3항을 삭제한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	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89조(납세지 등) ① · ② (생	제89조(납세지 등) ① • 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	③
고 제103조의13, 제103조의29,	
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	
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	
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	
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	
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	
한다.	-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	4
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	
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	
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	
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	
득에 대한 지방소득세: 그 소	
득의 지급지. 다만, 다음 각	
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	
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	
다.	

 가.・나. (생 략)
 가.・나.

 다. 제103조의13제1항 후단에
 << 소 제>

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같
 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좌

 보유자의 인출을 제한한
 경우 그 금융투자소득에

 대한 지방소득세: 대통령
 령으로 정하는 해당 계좌

의 개설지

제102조의6(예정신고와 납부) ① 거주자가 「소득세법」 제87조 의21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 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에 2개 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 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거주자가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<u><삭</u>제>

없다.

-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금 용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 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 야 한다.
- 1. 제102조의5에 따른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
- 2. 제98조 및 제102조의8에 따른 수시부과세액
- 제102조의7(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지 납부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금 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 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 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 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

ᄾ	102	2조	의7((과	세표	군	확정	신고와	
	남.	부)	1	•	2	(현	행과	같음)	
	3								

부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102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
 산출세액 또는 제97조 및 제1
 02조의8에 따라 결정·경정한
 세액
- 3. (생략)
- 4.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 수세액
- 제103조의13(특별징수의무) ① (생 략)
 -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128조제2항 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

	·
	1. (현행과 같음)
	2. 제97조
	3. (현행과 같음)
	<u><</u> 삭 제>
ارح	103조의13(특별징수의무) ①
^ II	
	(현행과 같음)
	②
	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128조제2
	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
	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
	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
	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
	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
	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.
	<u><삭 제></u>

반기(半期)별로 납부하는 경 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 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.

2.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 | <삭 제> 방소득세의 경우 해당 과세기 간의 반기 중에 계좌가 해지 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.

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| <삭 제>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계좌보유자별 특 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48조의2제1항 <u>각 호의 기간 중 그 인출</u>을 제 한할 수 있다.

④ 「소득세법」 또는 다른 법 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 자소득이 있는 사람이 「소득 세법」 제148조의2제5항에 따

<삭 제>

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배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⑤・⑥ (생 략)

제103조의59(지방소득세 관련 세 적 등의 통보)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(이하 이 조에서 "세무서장등"이라 한다)은 소득세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 증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신고(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) 받은 경우: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.

	(5)	•	6	(현	행과	같음	음)	
K)	103	조의	의59	(지빙	소득	세	관련	세
	액	등	의	통보)	1			
	1						·	
	1.							

가. (생략)

나. 「소득세법」 제70조, 제71조, 제74조, 제87조의23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 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<u>매매</u> 차익예정신고, 같은 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같은 법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: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

다. (생 략)

2. ~ 5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가. (현행과 같음)
나
<u>प</u> ्रो प्रो
차익예정신고

다. (현행과 같음)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